

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2. 11. 25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專 門 委 員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83호로 2022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 중 광고비용과  
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 
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나. 주소정보위원회 명칭 정비 (안 제6조)
- 다.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14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로명주소법」,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2. 9. 29. ~ 10. 19. 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 중 광고비용과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### 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4조에서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구청장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 중 유료의 경우 “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” 규정한 사항을 “주소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” 개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광고비 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4조에서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,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함에 따라 주소정보시설 유지·관리 위탁 시 “최근 3년 이내”라는 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도로명주소법」의 조례 위임사항인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시 광고비용을 “구청장이 정하는 것”에서 “주소정보위원회가 결정하도록” 개정하여 전문성을 담보하고 민주적 결정을 촉진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되며,
- 또한,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의 위탁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

### 도로명주소법

**제25조(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)** ①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(이하 “주소정보기본도”라 한다)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(이하 “주소정보안내도”라 한다)를 제작·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.

⑤ ~ ⑫ (생략)

**제31조(조례의 제정)**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, 유지·관리, 손해배상 공제 가입,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## 2

### 도로명주소법 시행령

**제45조(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)**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(이하 “주소정보안내도”라 한다) 또는 주소정보안내판(이하 “주소정보안내판”이라 한다)에 광고의 게재를 신

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

1.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(이하 “주소정보안내도등” 이라 한다)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

나. 둘 이상의 시·도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

2. 특별시장,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특별시장,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

나.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

3.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시장등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

나. 해당 지역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

② ~ ③ (생략)

④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(이하 “광고비용” 이라 한다)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.

1. 제1항제1호의 경우: 행정안전부장관 고시

2.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: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

2.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

3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과 광고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